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가단1005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정성원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

담당변호사 배준성

변 론 종 결 2021. 3. 25.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 피고 B에 대하여 : 주문 제1항과 같다.
- 피고 C에 대하여 : 피고들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8. 2. 체결된 증여계약을 9,2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9,2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원리금 합계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추가하는 청구원인’ 중 위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이하 제2항에서는 단순히 ‘피고’)에 대한 청구

가. 기초 사실관계

- 1) 원고는 피고 B(이하 제2항에서는 단순히 ‘B’)과 여러 차례에 걸쳐 돈거래를 한 사람이고, 피고는 B와 혼인하여 1994. 10. 27.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8. 11. 22. 협의이혼한 사람이다.
- 2) 원고는 B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4장의 차용증서 또는 현금보관증을 작성 · 교부받았다[다음 3)항

이하부터는 편의상 제목을 모두 ‘차용증’으로 통일하고 위 순번에 따라 ‘○번 차용증’으로 부른다].

순번	작성일	제 목	차용금	변제기	이자율	비고
①	2016. 5. 4.	차용증서	4,000만 원	2016. 11. 25.	연 25%	
②	2018. 6. 14.	현금보관증	300만 원	2018. 7. 20.	·	‘D에 변제’ 기재
③	2018. 7. 18.	·	1,300만 원	2018. 8. 27.	·	
④	2018. 10. 26.	현금보관증	1,100만 원	2018. 11. 15.	·	

3) B은 2018. 8. 2. 남편인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후(이하 ‘이 사건 증여’) 다음날인 2018. 8. 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이 사건 증여 당시 12억 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13억 원 정도이다(제4회 변론기일에 쌍방 다툼 없이 진술).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B의 채권자라는 원고가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가 민법 제406조 소정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채권 범위 내에서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B에게 별지2 ‘추가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2016. 4. 6.부터 2020. 11. 30.까지 돈거래를 한 결과 잔존 원금이 9,21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을 크게 결하는 것으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래 피보전채권에 관한 주장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가) 이 사건 소장에서는 ① 내지 ④번 차용증이 B와의 금전 거래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위 각 해당 일자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대여금 합계가 6,700만 원(= ①+②+③+④)에 이르나 변제된 돈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그러다가 피고가 2019. 2. 28. 준비서면에서 위 각 차용증이 B와의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일 가능성을 언급하자, 2019. 9. 4.자 준비서면에서는 갑 제9호증의 예금거래내역서(뒤에 추가 제출된 갑 제11호의 예금거래내역서도 내용은 같다)를 제시하면서 원고가 해당 계좌거래를 통해 B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돈의 합계가 1억 2,560만 원(위 증거상 2016. 4. 6.부터 2018. 12. 21.까지의 송금 합계인 것으로 보인다)이고 B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합계 4,275만 원을 원금으로 변제받아 그 잔액이 8,285만 원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시 2019. 11. 20.자 준비서면으로 갑 제9호증의 예금거래내역서 내용과 ① 내지 ④번 차용증의 내용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2020. 1. 15.자 준비서면에서 다시 ①번 차용증 작성 당시 송금한 340만 원 외에 3,66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하였으며(합계 4,000만 원) 이후 추가로 8,76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금 총액이 1억 2,760만 원인데(위 주장에 따르면 결국 거래 기간은 전항과 달리 2016. 5. 4.부터 2018. 12. 21.까지이다), B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60만 원을 송금하고 이와 별도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변제금 합계 6,060만 원)고 주장을 바꾸었다. 즉 위 대여금 총액 1억 2,760만 원에서 변제금 합계 6,060만 원을 빼면 위 가)항의 피보전채권 주장액인 6,700만 원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라) 그러나 다시 피고가 2020. 5. 15.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현금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위 거래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B에게 송금된 돈과 B으로부터 원고에게 송금된 돈을 비교하면 원고의 채권은 425만 원에 불과하다고 탄핵하자, 2020. 5. 15.자 준비서면에서는 ① 내지 ④번 차용증은 현금 대여분을 포함하거나 여러 거래 내역을 합하여 작성한 것이며(일부는 이미 공제한 선이자 금액을 참작하여 작성하였다고 한다) B의 송금 내역 중 일부는 이자를 변제한 것이어서 이를 제외한 원금 변제 부분만을 정리하면 6,060만 원이 된다고 설명을 추가하였다.

마) 이에 대해 피고가 2020. 5. 20.자 준비서면에서 ① 내지 ④번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대한 원고의 설명이 부자연스럽고(예를 들어 왜 특정 거래에 관하여만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는지) 이자 약정에

관한 증거가 없으며 송금받은 돈 중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자의적으로 계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바, 원고는 2021. 3.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보전채권에 관한 주장을 다시 별지2 ‘추가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수정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거래 개시일이 위 나)항의 2016. 4. 6.로 회귀하고 거래 종결일이 2020. 11. 30.까지로 연장된 결과가 되었으며, 원고의 새로운 설명에 의하면 B와의 거래에서 현금 거래는 없고 B으로부터의 송금 중 5회 합계 3,900만 원만 원금 변제이고, 나머지 4,805만 원은 이자를 변제한 것이라고 한다.

3) 위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가)~마)항 주장은 거래 기간, 대여금의 총액, ① 내지 ④번 차용증의 작성 경위, 현금 거래 유무와 대상, B의 변제 내역과 그 중 원금 및 이자의 구분 등에 관하여 최소한의 일관성도 없고 이에 따라 주장의 신빙성 또한 극히 떨어지는바, 이를 도저히 그대로 채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피고의 위 각 탄핵 내용은 대체로 수긍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4) 원고가 이 사건에서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는 크게 두 가지로서 하나는 B이 작성한 처분문서, 즉 위 ① 내지 ④번 차용증이고(이하 편의상 ‘처분문서 증거’) 또 하나는 위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예금거래내역서(이하 편의상 ‘계좌 증거’)인데, 위 두 가지 증거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은 물론, 위 2), 3)항에서 보았듯이 그 불일치에 대한 설명이 수시로 바뀌고 있으며, 그나마 각각의 설명 또한 피고가 적절히 탄핵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뜻 수긍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다. 또한 위 처분문서 증거의 증명력을 보완할 수 있는 피고 B 본인신문결과와 불명료, 회피, 전후모순으로 일관되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에 의할 때 위 ① 내지 ④번 차용증은 허위표시에 의해 작성된 문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만 생긴다.

5) 그리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처분문서 증거와 피고 B 본인신문결과 외에 원고와 B 사이에 위 송금액 전체에 관하여 이자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는바(이자 약정은 정황으로 추론할 사항이 아니고 원고가 증거를 들어 증명할 사항이다), 계좌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B에게 2016. 4. 6.부터 이 사건 증여일인 2018. 8. 2.까지 송금한 합계는 1억 2,360만 원(송금 수수료로 보이는 2,000원과 위 증여일 이후인 2018. 12. 28. 송금한 200만 원 제외)인데, B이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송금한 합계는 8,355만 원(2019. 4. 19.까지 추가 송금한 320만 원

제외)이므로 그 송금 차액은 4,005만 원(= 1억 2,360만 원 - 8,355만 원, 2019. 4. 19.까지의 내역을 모두 반영하면 송금 차액은 3,885만 원이 된다)으로 계산되어 원고의 피보전채권 금액에 관한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6) 위와 같이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원고의 최종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1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채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위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 취소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가정 판단)

설령 위 가.의 5)항에서 본 송금 차액 4,005만 원 또는 3,885만 원을 그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B이 무자력 상태에서 사해의사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의 이유로도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 B은 평소 피고에게 자신의 채무 내역을 이야기 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는 B이 종래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부담한 채무 외에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던 사실, ㉡ 피고는 B의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직접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하였는데 2018. 7.경 B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E 주식회사로부터 또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크게 화를 내고 더 이상 위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지 못하도록 B과의 합의 아래 위 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한 사실(위 증여 당시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11억 4,150만 원), ㉢ 그런데 이 사건 증여 이후 2018. 10.에 이르러 B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F이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자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과 협의이혼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 할 것이니, 원고는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마. 이 부분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상도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G아파트

H동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경사지붕 25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193.01㎡
2층	186.97㎡
3층	336.55㎡
4층	336.55㎡
5층	336.55㎡
6층	336.55㎡
7층	336.55㎡
8층	336.55㎡
9층	336.55㎡
10층	336.55㎡
11층	336.55㎡
12층	336.55㎡
13층	336.55㎡
14층	336.55㎡
15층	336.55㎡
16층	336.55㎡
17층	336.55㎡
18층	336.55㎡
19층	336.55㎡
20층	336.55㎡
21층	336.55㎡
22층	336.55㎡
23층	336.55㎡
24층	336.55㎡
25층	336.55㎡

표제부

제21층 1호 철근콘크리트조 133.97㎡

대지권의 표시

144209분의 63.7362. 끝.

별지2

청 구 원 인

·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 B에게 금 67,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고, 피고C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부동산을 증여받은 바 있습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

가. 원고는 지인을 통하여 알게된 피고 B에게, ①2016. 5. 4. 대여금 40,000,000원, 변제기 2016. 11. 25, 이자 연 25%(연 24%로 감축하여 청구합니다)로 정하여 대여하였고(갑제1호증 차용증서), ②2018. 6. 14. 대여금 3,000,000원, 변제기 2018. 7.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원고가 D에게 빌려서 다시 피고 B에게 대여하여, 갑제2호증 현금보관증에는 피고 B이 D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금원입니다, 갑제2호증 현금보관증), ③2018. 7. 14. 대여금 13,000,000원, 변제기 2018. 8. 2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갑제3호증 차용증서), ④2018. 10. 26. 대여금 11,000,000원, 변제기 2018. 11. 15.로 정하여 대여(갑제4호증 현금보관증)하는 등 합계금 67,000,000원을 대여한 바 있습니다.

나. 그러나 피고 B은 각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러저러한 핑계만을 대면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 B은 2018. 7. 14.자 차용증서(갑제3호증)에서 2018. 8. 27.까지 대여금 및 이자를 완납하지 못하면, 피고 B의 소유인 “서울 강동구 J시장 제1층 K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보니 이미 채권최고액 금 8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었고(갑제5호증 부동

산등기부등본), 피고 B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위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사해행위에 관하여

가. 원고는 피고 B이 위와같이 변제를 약속한 차용증서 및 현금보관증 상의 각 변제기를 모두 경과하였으므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등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B은 변제기가 경과하거나 차용을 한 직후인 2018. 8. 2. 피고 C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 8. 3. 제 1205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바 있습니다(갑제6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나.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 변제기가 경과하자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인 바, 위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피고 B의 일반재산의 감소가 초래되고 필연적으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 결국 원고로서는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피고 B의 위 처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법률행위로서 마땅히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다. 위 처분행위 당시 피고 B은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원고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극심한 자금악화로 인하여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 특히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남편)으로서 피고 B의 이러한 극심한 자금악화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점(갑제7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피고 B의 위 처분행위가 원고에 대한

대여금 변제기를 경과한 직후 이루어진 점,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C에게 증여하기 직전인 2018. 7. 2.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47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부업체인 E 주식회사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은 점,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로 자신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위 처분행위를 한 점, 피고 B은 증여계약을 한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은 위 처분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상대방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4. 결 어

이와같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와같은 대여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8. 8. 2. 체결된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해하는 법률행위로서 마땅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위 증여계약에 대하여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추가하는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액의 확정

가. 원고와 피고 B의 대여금액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으로부터 모든 거래내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대여금액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원고와 피고 B은, 원고의 L강일지점((계좌번호 1 생략) , 갑제9호중, 갑제11호중)에서 피고 B의 M은행, N, O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으므로 위 계좌상 아래의 거래내역으로 대여 및 변제내용은 명확히 입증됩니다.

순번	거래일자	대여금액 (출금금액, 원)	변제금액 (입금금액, 원)	비고	서 증
1	2016. 4. 6.	5,000,000		원고가 B에 계 4,000만원을 처음으로 대여 하면서, 선이자로 200만원을 공제 하고 3,800만원 을 입금	갑제1호증 공정증 서 : 원고는 B 에게 4,000만원 을 대여하면서 공 증을 하고 이자는 25%로 정함
2	2016. 4. 6.	4,800,000			
3	2016. 4. 26.	5,000,000			
4	2016. 4. 26.	4,800,000			
5	2016. 4. 29.	5,000,000			
6	2016. 4. 29.	5,000,000			
7	2016. 4. 29.	5,000,000			
8	2016. 5. 4.	3,400,000			

순번	거래일자	대여금액 (대출금액, 원)	변제금액 (입금금액, 원)	비고	서 종
9	2016. 5. 28.		1,000,000	이자 변제	
10	2016. 5. 26.	5,000,000			
11	2016. 5. 26.	5,000,000			
12	2016. 6. 9.	1,000,000			
13	2016. 6. 25.		2,350,000	이자 변제	
14	2016. 7. 25.		1,300,000	이자 변제	
15	2016. 7. 28.	5,000,000			
16	2016. 7. 26.	4,700,000		선이자 30만원 공제	
17	2016. 8. 12.		300,000	이자 변제	
18	2016. 8. 25.		1,300,000	이자 변제	
19	2016. 9. 30.		21,300,000	2,000만원 원금변제	
20	2016. 10. 7.	4,900,000		선이자 10만원 공제	
21	2016. 10. 10.		300,000	이자 변제	
22	2016. 10. 11.	5,000,000			
23	2016. 10. 11.	4,700,000		선이자 30만원 공제	
24	2016. 10. 26.		1,000,000	이자 변제	
25	2016. 11. 15.		450,000	이자 변제	
26	2016. 11. 25.	6,000,000			
27	2016. 11. 25.	3,700,000		선이자 30만원 공제	
28	2016. 11. 30.		800,000	이자 변제	
29	2016. 12. 15.		450,000	이자 변제	
30	2016. 12. 28.	2,000,000			
31	2017. 1. 5.		1,000,000	이자 변제	
32	2017. 1. 26.		8,000,000	원금 변제	
33	2017. 2. 14.		2,000,000	이자 변제	
34	2017. 2. 27.		2,000,000	이자 변제	
35	2017. 3. 10.		1,000,000	이자 변제	
36	2017. 4. 20.		2,000,000	이자 변제	
37	2017. 5. 11.		2,000,000	이자 변제	
38	2017. 6. 22.		1,000,000	이자 변제	
합계금			49,550,000		

순번	거래일자	대여금액 (출금금액, 원)	변제금액 (입금금액, 원)	비고	서 증
39	2017. 7. 5.		1,000,000	이자 변제	
40	2017. 7. 26.		500,000	이자 변제	
41	2017. 7. 27.		500,000	이자 변제	
42	2017. 8. 14.		1,000,000	이자 변제	
43	2017. 8. 31.		1,000,000	이자 변제	
44	2017. 9. 8.		100,000	이자 변제	
45	2017. 9. 14.		1,000,000	이자 변제	
46	2017. 9. 29.		1,000,000	이자 변제	
47	2017. 9. 29.	5,000,000			
48	2017. 9. 29.	5,000,000			
49	2017. 10. 13.		1,000,000	이자 변제	
50	2017. 10. 31.		500,000	이자 변제	
51	2017. 11. 3.		500,000	이자 변제	
52	2017. 11. 16.		1,000,000	이자 변제	
53	2017. 11. 29.		750,000	이자 변제	
54	2017. 12. 1.		500,000	이자 변제	
55	2017. 12. 11.		1,000,000	이자 변제	
56	2017. 12. 27.	2,001,000		1,000원은 송금수수 료로 대여금에서 제 외	
57	2018. 1. 11.		1,100,000	이자 변제	
58	2018. 1. 29.		300,000	이자 변제	
59	2018. 2. 2.		500,000	이자 변제	
60	2018. 2. 13.		1,900,000	이자 변제	
61	2018. 2. 27.		300,000	이자 변제	
62	2018. 3. 6.		1,000,000	이자 변제	
63	2018. 3. 13.		1,500,000	이자 변제	
64	2018. 3. 27.	4,700,000		선이자 30만원 공제	
65	2018. 3. 27.	4,000,000			
66	2018. 4. 18.		1,000,000	이자 변제	
67	2018. 4. 27.		5,450,000	500만원 원금변제	
합계금			24,400,000		

순번	거래일자	대여금액 (출금금액, 원)	변제금액 (입금금액, 원)	비고	서 증
68	2018. 4. 30.		1,000,000	이자 변제	
69	2018. 5. 14.		3,000,000	원금 변제	
70	2018. 5. 17.	5,000,000			
71	2018. 5. 29.		300,000	이자 변제	
72	2018. 7. 2.		1,300,000	이자 변제	
73	2018. 7. 3.	1,001,000		1,000원은 송금 수수료로 대여금 에서 제외	갑제3호증 각서 : 원고는 원고의 P 카드와 Q 카 드를 이용하여 카 드대출을 받아 1,300만원(10만원 선이자 공제)을 빌려주었고, B 은 이에 대하여 2018. 8. 27.까지 변제를 약속함
74	2018. 7. 5.		1,000,000	이자 변제	
75	2018. 7. 11.		3,000,000	원금 변제	
76	2018. 7. 13.	2,900,000			
77	2018. 7. 13.	3,000,000			
78	2018. 7. 14.	3,000,000			
79	2018. 7. 14.	3,000,000			
80	2018. 8. 1.		300,000	이자 변제	
81	2018. 9. 4.		1,000,000	이자 변제	
82	2018. 10. 24.		1,000,000	이자 변제	
83	2018. 11. 20.		300,000	이자 변제	
84	2018. 11. 30.		300,000	이자 변제	
85	2018. 12. 21.	2,000,000			
86	2019. 4. 19.		300,000	이자 변제	
87	2020. 2. 3.		100,000	이자 변제	
88	2020. 9. 15.	4,000,000			
89	2020. 9. 28.	1,500,000			
90	2020. 11. 30.		200,000	이자 변제	
합계금			13,100,000		

(1) 원고와 피고 B는 서로의 계좌로만 거래하였으므로, 계좌상 대여금과 변제금이 남게 되므로 대여할 때마다 서면은 작성하지 않았으나, 특별한 경우 예컨대, 갑제1호증 공정증서와 같이 4,000만원을 처음으로 대여하게 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자를 연 25%로 정하여 이후에도 이러한 이자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으며, 갑제3호증 각서는 원고가 2018. 7. 신용카드대출까지 받아 1,300만원을 대여하게 되어 변제기일을 명시하고자 각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갑제4호증 각서는 원고가 주택의 가계약금과 계약금 등이 필요하여 피고 B이 1,100만원을 2018. 11. 15.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한 바 없습니다.

(2) 갑제2호증 현금보관증은,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대여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 B이 모두 잘 알고 있던 D에게 부탁하여 원고가 D로부터 300만원을 빌리고 대신 피고 B이 D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작성한 것이었으나, 피고 B은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보증인으로 서 원고가 D에게 변제한 바 있습니다(갑제12호증 이행각서 참조).

나. 잔존 대여 원리금의 산정

피고 B은 아래와 같이 원금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입금액은 이자를 변제한 바 있습니다.

(1) 2016. 9. 30. 원금 20,000,000원 변제

- 2016. 9. 30.까지 대여원금 58,700,000원 중 20,000,000원을 변제하여, 대여원금은 38,700,000원입니다.

(2) 2017. 1. 26. 원금 8,000,000원 변제

- 2017. 1. 26.까지 대여원금 65,000,000원 중 8,000,000원을 변제하여, 대여원금은 57,000,000원입니다.

(3) 2018. 4. 27. 원금 5,000,000원 변제

- 2018. 4. 27.까지 대여원금 77,700,000원 중 5,000,000원을 변제하여, 대여원금은 72,700,000원입니다.

(4) 2018. 5. 14. 원금 3,000,000원 변제

- 2018. 5. 14.까지 대여원금 72,700,000원 중 3,000,000원을 변제하여, 대여원금은 69,700,000원입니다.

(5) 2018. 7. 11. 원금 3,000,000원 변제

- 2018. 7. 11.까지 대여원금 75,700,000원 중 3,000,000원을 변제하여, 대여원금은 72,700,000원입니다.

(6) 원고는 피고 B에게 19,400,000원을 대여하여 현재 잔존 대여원금은 92,100,000원입니다. 한편 피고 B이 원고에게 입금한 금액의 합계액은 87,050,000원으로 이 중 위와같이 원금변제액인 39,000,000원을 공제하면 이자 입금액은 48,050,000원으로 이는 아래와 같이 원금의 이자액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소제기일인 2019. 1. 3.까지 산정 이자
(단위 : 원)

대여일자	대 여 금	이 자	비 고
2016. 5. 4.	38,000,000	24,361,644	2016. 4. 6.부터 2016. 5. 4.까지 송금액 기준 38,000,000을 대여하였고, 이자산정 기산일은 2016. 5. 4.로 산정합니다.
2016. 5. 26.	10,000,000	6,266,301	
2016. 6. 9.	1,000,000	617,425	
2016. 7. 26.	9,700,000	5,689,249	
2016. 10. 7.	4,900,000	2,638,751	
2016. 10. 11.	9,700,000	5,198,137	
2016. 11. 25.	9,700,000	4,911,123	
2016. 12. 28.	2,000,000	969,205	
2017. 9. 29.	10,000,000	3,037,808	
2017. 12. 27.	2,000,000	490,521	타행 이체수수료 1천원 제외
2018. 3. 27.	8,700,000	1,618,915	
2018. 5. 17.	5,000,000	762,740	
2018. 7. 3.	1,000,000	121,644	타행 이체수수료 1천원 제외
2018. 7. 13.	5,900,000	678,904	
2018. 7. 14.	6,000,000	686,466	
2018. 12. 21.	2,000,000	18,411	
합 계		59,349,436	

(7) 소 결

이와같이 원고는 피고 B에게 원금 92,1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송
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결 어

원고는 피고 [B] 으로부터 금 92,1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 [C] 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의 취소로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와 피고 [B] 사이에 2018. 8. 2.자 체결된 증여계약을 금 9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며, 피고 [C] 는 원고에게 금 9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위 원리금 합계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